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검토 보고서

2023. 6. 12.(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
- 제안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67)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의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원에 대한 세출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 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안 제4조제4호)
- 특별회계 세출기준 명확화(안 제5조제1호)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의료급여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4. 25. ~ 5. 15. (제출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비용 지원에 대한 세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의 2에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 안 제4조의 제4호에서는 의료급여법 제21조 개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며
 - 안 제5조 제1호에서는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화 하고자 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로 정해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2023. 3. 29~3. 31.까지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으로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의료급여법」 제21조의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이며,
- 특별회계 세출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1조가 2013년 7월 1일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의료급여법

-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지급금의 상환) ① 제20조에 따라 대지급금을 받은 사람(그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② 상환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을 새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공문



새로운 마포 더좋은 마포

마포구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마포구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1. 디지털재정과-5281(2023. 4. 3.)호 관련입니다.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심의기간 : 2023. 3. 29.(수) ~ 3. 31.(금)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결과 : 아래 특별회계,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2028년 12월 31일까지)은 '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함

연번	특별회계(기금)명	부서
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보장과
2	마포 농수산물시장 특별회계	경제진흥과
3	건축안전 특별회계	건축지원과
4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생활보장과
6	공유재산 관리기금	재무과

끝.

마포구청장

수신자 생활보장과장, 경제진흥과장, 재무과장, 건축지원과장, 주차관리과장

주무관

예산팀장

디지털재정과장

협조자

시행 디지털재정과-5477 (2023.04.06.) 접수 생활보장과-9176 (2023.04.06.)

우 0393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www.mapo.go.kr

전화 02) 3153-8513 /전송 02) 3153-8549 / hsh0628@mapo.go.kr / 공개